

# 부산직할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기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1992. 10. 14

의회 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10. 2일 최진동 의원외 9인 의원 발의

나. 회부 일자 : 1992. 10. 9일 회부

다. 상정 일자 : 제16회 남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1992. 10. 14일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진동 위원)

#### 가. 제안 이유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

(92.9.21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)됨에 따라 남구의회 공인 조례 중  
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골자

- 제2조(종류) 제2항 제3호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
- 제5조(교부 및 등록)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
- 제8조(재교부 및 폐기) 제1항 및 제2항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
- [별표] 공인의 규격 제4호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개정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- 부산직할시남구의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은 1992. 9. 21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 
1992.9.21일 남구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인 본 조례안의 제2조(종류), 제5조(교부 및 등록), 제8조(재교부 및 폐기), 별표의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,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### 5. 토론 요지 : 없 음

### 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### 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